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64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3,577,6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519,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로○○(○○동)에 본점을 두고 전력자원의 개발업 내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산하에 ○○○○본부, ○○○○본부, ○○○○본부 등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각 본부별로 해당 본부 소재지에서 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 29. ○○ ○○구 ○○로 ○(○○동)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본부가 사용할 발전시설 및 통합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2019. 8.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611,075,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시장은 2020. 7. 2.부터 2020. 7. 9.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축 중 9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110㎡), 중회의실[1](95㎡), 접견실[2](90㎡), 임원실(110㎡) 등 405㎡(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526,758,749,794원 중 이 사건 사무실 면적비율(405㎡/46,417.7㎡)에 해당하는 4,596,033,273원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0. 9. 9. 원고에게 213,577,660원(가산세 29,736,3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9,519,350원(가산세 1,135,220원 포함) 합계 233,097,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그 명칭이 '이사회 대기실 및 고충상담실'이었다가 이후 '중회의실'로 변경.
2) 부속실 포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본점이 아닌 ○○○○본부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본점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을 본점 사업용 건축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여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취지 참조),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모두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모두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경우 그러한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법인들이 실제의 본점 등을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규정상의 대도시 내의 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라 할 것이다.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기획, 조정, 총괄, 재무 등 법인의 주된 사무 등이 수행되고, 법인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 8층에는 ○○○○본부의 본부장 집무실, 접견실, 대회의실 및 예비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년에 1회, 2020년에 2회 이 사건 사무실 중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0년에 총 1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사무실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서 2회,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1회, ○○○○○협력본부에서 6회 각 개최하였고, 나머지 4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 열린 총 12회의 이사회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1회, ○○○○○협력본부에서 7회 각 개최되었고, 나머지 4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3)]

라) 2021. 6. 기준으로 이 사건 사무실 중 '이사회 회의실'의 총 사용횟수는 119회인데 본점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18회이고(이 중 3회가 앞서 본 이사회 개최이고, 나머지는 '발전회사 감사업무 교류회', '조달청 해외동반진출 협약식 리허설' 등과 같은 행사 등에 활용되었다), 나머지 101회는 모두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중회의실'의 경우 총 72회 사용되었는데 본점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3회이고, 나머지 69회는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마) 원고의 직제규정상 본점 기구표에 규정되어 있는 본점 산하의 모든 기구들은 ○○시 소재의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중 사장, 상임이사(기획관리본부장, 기술안정본부장) 역시 본점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8층에 본부장 집무실, 접견실, 대회의실 및 예비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9층에 별도로 이 사건 사건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본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본부에는 '임원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가 3번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점의 주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점, 본사와 ○○○○본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본부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

3)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2022. 12. 14.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일시적, 비상시적으로 본점의 사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무실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법인의 주된 사무 등이 수행되고 법인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이 본점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건물 내지 사무실에 원고의 본점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과세 대상 여부는 법인의 중추적 기능이 수행되는 본점의 사무소로만 규정되고 그 장소에 상주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점의 주된 사무(그것이 본점 사무의 일부라 하더라도)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더러 본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내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상주하는 인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본점(내지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인적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직속하는 인력은 물론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인적설비에 포함될 수 있는 인력이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다(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93누17690 판결 역시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경리부 차장의 책임 하에 직원 8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이 상주하여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한 경우로서 물적설비 외 인적설비까지 갖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8층에 이 사건 사무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본부의 본부장 집무실, 접견실, 대회의실 및 예비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건물의 규모 및 현황에 따라 얼마든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사무실이 예비적으로 혹은 실제 사용을 위하여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일 기능 사무실이 중복하여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무실이 ○○○○본부 사업과 구분되는 본점의 물적설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 회의실'이나 '중회의실' 모두 대부분 ○○○○본부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의 본점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여(이사회 회의실의 경우 약 15%, 중회의실의 경우 4%만이 본점 업무에 사용됨)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사무실을 본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물적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이사회에서 본점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사회가 반드시 본점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이사회 중 거의 과반수를 본점이나 이 사건 사무실이 아닌 ○○○○○협력본부에서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주된 이사회 개최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는데 있는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무실에 상주하며 본점의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이 확인된 바 없고, 단순히 일시적, 단발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본점의 행사 등에 사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된 경우까지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1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끝.